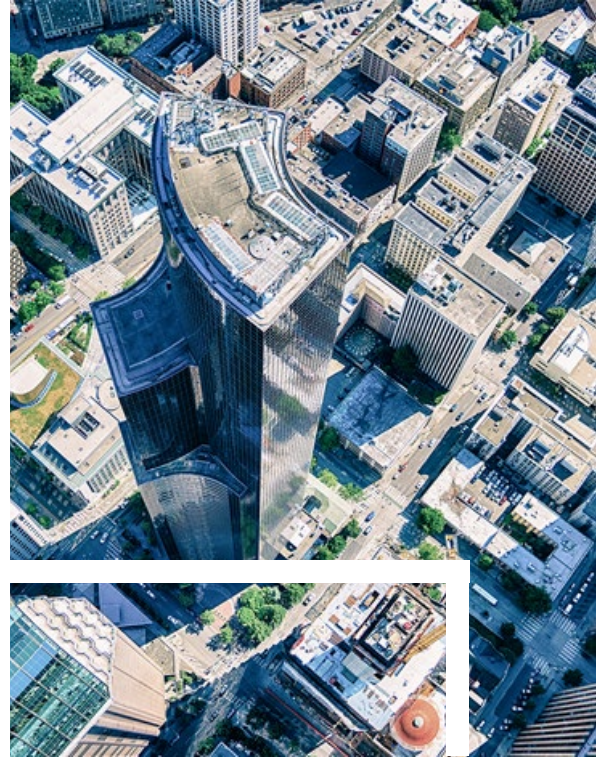


Samil Global Tax Update

June 2021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유럽연합	유럽집행위원회(EC) 21세기 Business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문
네덜란드	2021년 네덜란드 세제 주요 개정사항
중국	소규모 기업 우대세율 도입 및 R&D 추가비용공제율 확대
우크라이나	디지털서비스 부가가치세 도입



삼일회계법인

주요 조세 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유럽 연합

• 유럽집행위원회 21 세기 Business 과세 체계에 대한 입장문

2021년 5월 18일 유럽집행위원회 (EC)는 향후 Business 과세에 대한 위원회 시각의 장단기 전망과 조치 내용을 담은 21세기 Business 과세 입장문을 발표함.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다가올 10년에 대비해 유럽연합 전체적인 기업 세제 틀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성 및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과세권 재분배 및 글로벌 최저한세 등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다음의 조치들을 입장문을 통해 발표함:

-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project 제 1, 2 원칙 (Pillar 1 and 2)의 이행:

위원회는 Pillar 1, 2 를 이행하기 위한 법령(Directive)을 발의할 예정임. 최저한세에 대한 글로벌 합의에 대한 이행은 현재 EU 내 기존 Directive 내지 입법 추진 중인 법령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위원회는 Pillar 2 관련 규정을 EU 가 공시하고 있는 비협조국가/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s) 선정시 고려하도록 추가하여 해당지역들이 글로벌 합의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한편, 현재 계류 중이던 이자 및 사용료 법안(Directive)에 subject-to-tax-rule 을 포함하여 재추진 예정임.

- 명목회사(Shell Company)를 통한 공격적인 조세회피 전략 대응을 위한 법안 발의(ATAD 3):

위원회는 유럽연합 내 기업들이 실질 거주 여부와 실질적인 경제 활동 유무를 평가하기 위한 관련 필요자료를 관할 세무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여, 과세당국이 요건을 미충족하는 기업에 부여된 조세혜택을 부인하거나 또는 명목 회사 사용을 통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안을 2021 년 4 분기에 발의할 예정임. 당 법안에는 새로운 세무 정보와 감시 및 투명성 필요 요건도 포함될 것으로 보임. 위원회는 사용료와 이자 대금이 이중 부과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대안도 내놓을 예정임.

- EU 내 활동중인 대기업의 연간 유효세율에 대한 공시 입법안:

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project Pillar 2 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서 대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유효 세율을 매년 공시하는 입법안을 발의할 예정임. 이 입법안은 2022 년 발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럽 연합의 대기업들이 부담하는 실제 유효 세율을 둘러싼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

- 유럽 법인세 체계 (Business in Europe: Framework for Income Taxation, "BEFIT") 입법안:

2023 년에 발의될 입법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함:

- ① 유럽 연합 국가들 사이의 과세권 배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의 배분기준을 좀 더 단순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편
- ② 과세 당국과 납세자들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 경감
- ③ 조세 회피를 엄중히 다루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장려
- ④ 유럽연합 멤버 국가들에게 좀더 예측 가능한 법인세 소득 확보를 가능하게 함
- ⑤ 현재 계류중인 기업 공통 연결 과세표준 (CCCTB)입법안은 철회되고 이를 대체

- ⑥ 민간부문, 그리고 유럽의 국회들까지도 고려해 다른 유럽 연합 국가와 협업으로 입법안을 준비

- 새로운 EU 자체 자원 관련 입법안:

유럽 이사회의 요청에 발맞춰, 유럽연합 위원회는 경제회복기금 (NextGenerationEU)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한 신규 자원 관련 입법안도 도입할 예정임.

2021년 7월, 위원회는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을 지지하고 가속화하는 핵심 정책 및 WTO 과 기타 국제적 의무와 양립가능한 디지털 과세 (Digital levy) 를 제안할 예정임. 이러한 Digital Levy 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OECD 및 Global 차원에서의 국제조세개혁과 독립적으로 도입될 것이고 양립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한편, 2018년 EC 가 제안한 Digital Service Tax 및 Digital presence 는 철회될 것임.

추가하여, 2021년 7월 유럽 연합의 기후 정책과 발맞춰, 탄소 국경 조정 방식 (CBAM)과 개정된 유럽 연합 배출가스 교역 거래 방식 (Emissions Trading System, ETS)에 사용될 새로운 가격정책 개정안도 제안할 것임. 이후에는 기업 분야와 관련해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와 다른 자체 입법안도 도입 계획 중임.

- 이번 발표문 외에도 위원회는 COVID-19 상황에서 회사가 2020 과 2021년의 손실을 2020년 이전까지 발생한 이윤에 부과된 세금을 소급 공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유럽연합 중소기업 손실 대응 조치를 발표함.

• PwC Observation

- 이번 EC 입장문 발표는 향후 유럽 세제의 개편방향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Pillar 1, 2 의 도입과 병행하여 새로운 Digital Levy 가 도입되는 등 디지털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과세체계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는 점, 화두가 되고 있는 ESG 와 맞물려 CBAM 과 ETS 에 대한 Pricing mechanism 조정안 등 환경 관련 여러 정책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유럽 경제회복기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재정확보 정책이 고려 중이라는 점에 있어, 매우 큰 폭의 조세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EU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의 변화에 대해서 적시에 파악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네덜란드

• 2021년 네덜란드 세제 주요 개정사항

2021년 네덜란드 세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법인세율 변화

- 법인세율은 25%로 유지됨. 1 단계 법인세 누진세율은 16.5%에서 15%로 낮아짐. 1 단계 세율은 2021년 과세표준 EUR 245,000 까지 적용되며, 2022년에는 EUR 395,000 으로 상향 됨.

(2) Innovation box 제도 우대 세율 개정

- Innovation box 제도에 따라 연구 개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우대 세율이 7%에서 9%로 증가함.

(3) 이월결손금 공제 제도의 변화

- 이월결손금이 EUR 1 백만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을 사용하는 해에 EUR 1 백만을 차감해서 나온 네덜란드 과세소득의 50%에 EUR 1 백만을 더한 금액까지 이월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음. 이런 제한은 이월결손금을 소급 공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월결손금에 대한 변경 사항은 2022 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월결손금과 2021 년 기말 현재 잔여 이월결손금에 대해 적용됨.

(4) 이자비용과 사용료 조건부 원천징수

- 다음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지불되는 이자비용 및 사용료 금액에 대해 조건부 원천징수세가 도입되었음
 - ① 법인세 등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 과세관할권에 소재하는 납세자 혹은 실효세율 9% 미만 과세관할권에 소재하는 납세자
 - ② EU 조세분야 비협조 관할권에 소재한 납세자
- 동 원천세 제도는 2021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어, 법인세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될 것임.

• PwC Observation

- 이자비용과 사용료 조건부 원천징수의 경우 국내기업은 실효세율 9%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며 EU 조세분야 비협조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예상됨. 다만, 국내기업이 직접 해당 소득을 수령하는 것이 아닌 Intermediary entity 를 국내가 아닌 지역에 설치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적용에 따라 Tax leakage 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해당여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중국

• 소규모 기업 우대세율 도입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기업(Small and Thin-profit enterprise; STE)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되어, 1백만 RMB 미만의 과세소득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50% 경감된 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됨.

- 구체적으로, STE 의 과세소득이 1 백만 RMB 미만일 경우, 과세소득은 87.5% 경감된 후 기업소득세율 20%를 적용 받게 되어, 2.5%의 실효세율이 적용됨.
- STE 의 과세소득이 1 백만 RMB 를 초과하고 3 백만 RMB 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소득은 50% 경감된 후 기업소득세율 20%를 적용받게 되어, 10%의 실효세율이 적용됨.

• R&D 추가비용공제율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제조 업종에 적용되는 R&D 추가비용 공제율이 75%에서 100%로 확대됨

-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되지 않고 비용처리 되는 경우, 납세자는 지출한 적격 R&D 비용을 추가적으로 100%만큼 차감할 수 있음.
- 연구개발비가 자본화되어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경우, 해당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의 200%만큼 상각가능함.

● **PwC Observation**

- R&D 비용에 대해서 실제 발생 비용에 더하여 추가로 100%를 세무상 비용 처리해주는 규정이며, 기존 75%에서 확대된 조치이므로 관련 기업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고신기술기업의 요건과 유사하므로 R&D 추가공제 해당기업의 경우 고신기술기업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세무상 혜택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우크라이나

● **디지털서비스 부가가치세 도입**

지난 6월 3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세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가지며,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거주자인 개인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비거주자는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함
- 부가가치세 목적상 전자적 용역은 글로벌 공공정보 시스템(global public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공급되고, 국제기준에 따라 정의된 인터넷 통신규약(protocol)에 기반하며, 인적 간섭(human intervention)이 거의 없이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자동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를 의미함. 전자적 용역의 사례는 다음과 같음 :
 - 사진, 전자책, 잡지 등과 같은 이미지 및 문자를 공급하는 경우
 - 시청각 자료, 온라인 도박, 영상, 게임을 공급하는 경우(관련 용역의 공급 포함)

- 상업, 교육, 오락에 대한 정보 및 이와 유사한 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
-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련 업데이트의 이용을 위한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이를 구동하기 위한 전자기기의 이용 및 원격 이용을 포함)
- 인터넷,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기타 전자적 자원에서 광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다음의 사례는 전자적 용역으로 취급되지 않음
 - 온라인 환경에서 주문이 이루어지지만 인터넷을 통해 제공받는 용역이 아닌 경우
 - 컴퓨터 소프트웨어(게임 포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매체를 통하여 물리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 이메일을 통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인터넷 접근(internet access)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디지털서비스를 공급받는 자가 우크라이나에 소재한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디지털서비스가 공급된 것으로 간주됨
- 우크라이나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우크라이나 거주자 개인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며, 해당 매출액이 직전연도 기준으로 UAH 1 백만(약 4 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해의 3월 31일까지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 (VAT invoices) 발급의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서비스의 공급 여부와 무관하게 과세기간 종료 후 40 일 이내에 전자적인 방법으로 간소화된 형태의 부가가치세 신고(simplified VAT return)를 수행하여야 함

• **PwC Observation**

- B2B 가 아닌 B2C 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직전연도 매출액 기준 약 4 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지 사업자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바, 현지 매출이 기준점을 상회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공급 받는자의 형태 및 제공하는 용역의 과/면세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발생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필요시 현지 Compliance 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됨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pwc.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pwc.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han-kyu.kim@pwc.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ong-hyeon.kim@pwc.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n-dae.park@pwc.com

소주현, Partner
02 709 8248
so.juhyun@pwc.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inlee@pwc.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ong-youl.lee@pwc.com

전원엽, Partner
02 3781 2599
won-yeob.chon@pwc.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unghwan.cho@pwc.com

Global Tax Update에 소개된 주제 중 주요 주제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의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을 [삼일 공식 YouTube 채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 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뉴스레터는 삼일회계법인의 고객을 위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배포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문제나 세무이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일회계법인의 뉴스레터에 담긴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십시오.